

간통죄 罰金刑조항 신설

憲裁 “體刑위주는 잘못” 지적 따라

법무부 刑法개정때 추가기로

법무부는 17일 앞으로 있
을 형법개정과정에서 간통
죄를 폐지하던 방침을 바
꿔 계속 조처시키되 징역
형만으로 되어있는 처벌규
정에 벌금형을 추가 보완
키로 했다.

이같은 방침은 최근 헌
법재판소에서 간통죄에 대
해 합헌결정을 내린데 따
른 것으로 당시 「처벌규정
에 체형만 있고 벌금형이
없는 것은 잘못」이라는 소
수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해
석된다.

법무부 관계자는 「간통죄
를 폐지하려는 입법정책의 문제
로 합헌결정은 무관하나
헌법재판소가 국민의 법
감정상 간통죄 처벌이 우
려 현실에 부합된다고 지
적한만큼 이를 받아들여 계
속 조처시키는데 방안을 적극
검토키로했다」고 밝혔다.
이 관계자는 또 「간통죄
선법의 여지없이 징
역을 확정한다.
죄를 확정한다.
법무부는 지난해 1월 형
법학자들로 구성된 헌법
개정소위원회가 8대 2 찬
성으로 결정한 간통죄 폐지
의견을 받아들여 형법개정
요강에서 이를 폐지했었다.
한편 헌법재판소는 10일
「간통죄는 일부일처 혼인
제도에 반하고 혼인으로 인
해 배우자에게 지고 있는

페지여부는 입법정책의 문제
로 합헌결정은 무관하나
헌법재판소가 국민의 법
감정상 간통죄 처벌이 우
려 현실에 부합된다고 지
적한만큼 이를 받아들여 계
속 조처시키는데 방안을 적극
검토키로했다」고 밝혔다.
이 관계자는 또 「간통죄
선법의 여지없이 징
역을 확정한다.
죄를 확정한다.
법무부는 지난해 1월 형
법학자들로 구성된 헌법
개정소위원회가 8대 2 찬
성으로 결정한 간통죄 폐지
의견을 받아들여 형법개정
요강에서 이를 폐지했었다.
한편 헌법재판소는 10일
「간통죄는 일부일처 혼인
제도에 반하고 혼인으로 인
해 배우자에게 지고 있는